

##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 등 변경 안내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 일부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대상 펀드

- AB 미국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 (주식 - 재간접형)
- AB 글로벌 고수의 증권 투자신탁(채권 - 재간접형)
- AB 퓨처 트렌드 증권 투자신탁(주식 - 재간접형)
- AB 퀄리티 고수의 증권 투자신탁(채권 - 재간접형)

□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

<투자설명서>

- AB 퓨처 트렌드 증권 투자신탁(주식 - 재간접형)
- AB 퀄리티 고수의 증권 투자신탁(채권 - 재간접형)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예금보험관계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수정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u>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u>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u>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u>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u></u>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자료 갱신		자료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규정 개정사항 반영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u>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u>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u>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u>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자료 갱신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비용 등,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 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업데이 트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법 개정사항 반영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 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 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 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 배당소 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 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 다.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 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 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 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 배당소 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 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 다.
제 3 부. 집합투자기 구의 재무 및 운용실 적 등에 관한 사항	자료 갱신		자료 업데이트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 규모	자료 갱신		자료 업데이트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소규모펀드 임의해지 시 투자자에 대한 통지 절차 추가	문구 추가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이 경과한 이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합니다.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2) 수시 공시	규정 개정사항 반영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계열펀드 판매절차 준수여부 추가	문구 추가	7. 판매회사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할 경우 계열사 펀드임을 설명하고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하여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 받으셨나요?

- AB 미국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 (주식 - 재간접형)
- AB 글로벌 고수익 증권 투자신탁(채권 - 재간접형)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펀드 전반	종류 C-P 추가에 따른 정정	-	종류 C-P 추가에 따른 종류별 가입자격 정정, 종류 C-P 환매수수료 추가, 보수 및 수수료, 비용 추가 및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문구 추가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예금보험관계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수정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9.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피투자펀드인 “얼라이언스번스틴 이머징마켓 채권 포트폴리오”는 공동투자펀드(FCP) 형태로 설립되어 룩셈부르크 2002년 법에 따라 투자자총회라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한 바, 위탁회사(Management Company)의 이사회에서 승인된 결정을 따르며, 통상 중요한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9.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피투자펀드인 “얼라이언스번스틴 글로벌 고수익채권 포트폴리오”는 공동투자펀드(FCP) 형태로 설립되어 룩셈부르크 법에 따라 투자자총회라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 중요한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의사결정(예를 들어, 투자목적의 변경, 자산운용회사의 변경, 보수의 인상 등)에 대하여 록셈부르크 감독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변경의 효력발생일 1개월 이전에 투자자에게 사전 통지하여 반대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동 기간 동안 환매수수료나 전환수수료의 추가 부담 없이 투자한 펀드를 환매하거나 다른 펀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결정(예를 들어, 투자목적의 변경, 자산운용회사의 변경, 보수의 인상 등)에 대하여 록셈부르크 감독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변경의 효력발생일 1개월 이전에 투자자에게 사전 통지하여 반대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동 기간 동안 환매수수료나 전환수수료의 추가 부담 없이 투자한 펀드를 환매하거나 다른 펀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자료 갱신		자료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규정 개정사항 반영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u>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u>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u>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u>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 C-P 추가 및 자료 갱신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비용 등,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 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법 개정사항 반영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 배당소득)이 <u>4천만원</u>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 배당소득)이 <u>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u>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 배당소득)이 <u>2천만원</u>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 배당소득)이 <u>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u>
제 3 부. 집합투자기	자료 갱신		자료 업데이트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 규모	자료 갱신		자료 업데이트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소규모펀드 임의해지 시 투자자에 대한 통지 절차 추가	문구 추가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합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2) 수시 공시	규정 개정사항 반영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계열펀드 판매절차 준수여부 추가	문구 추가	7. 판매회사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할 경우 계열사 펀드임을 설명하고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하여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 받으셨나요?

<집합투자규약>

- AB 퓨처 트렌드 증권 투자신탁(주식 - 재간접형)
- AB 퀄리티 고수익 증권 투자신탁(채권 - 재간접형)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50 조(공시 및 보고서 등) 제 2 항 제 1 호	법규 개정내용 반영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제 50 조(공시 및 보고서 등) 제 7 항	법규 개정내용 반영	⑦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b>판매회사</b> 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⑦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b>판매회사 또는 한국에탁결제원</b> 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 AB 미국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 (주식 - 재간접형)
- AB 글로벌 고수익 증권 투자신탁(채권 - 재간접형)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제 3 항	종류 C-P 추가	-	종류 C-P 수익증권
제 10 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제 1 항	종류 C-P 추가	-	종류 C-P 수익증권
제 25 조(판매가격) 제 1 항	종류 C-P 추가	-	종류 C-P 수익증권: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지축계좌의 가입자
제 39 조(보수) 제 3 항	종류 C-P 추가	-	(종류 C-P) 보수율 추가
제 41 조(환매수수료) 제 2 항	종류 C-P 추가	-	종류 C-P 수익증권: 90 일 미만 : 이익금의 70%
제 41 조(환매수수료) 제 3 항	종류 C-P 추가에 따른 문구 추가	③판매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52 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③판매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52 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 <b>종류 C-P 의 경우에는 “연금지축계좌설정약관”</b> )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제 50 조(공시 및 보고서 등) 제 2 항 제 1 호	법규 개정내용 반영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제 50 조(공시 및 보고서 등) 제 7 항	법규 개정내용 반영	⑦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b>판매회사</b> 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⑦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b>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b> 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 52 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종류 C-P 추가에 따른 문구 추가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 <b>종류 C-P의 경우에는 "연금지속계좌설정약관"</b> )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 변경 수리일: 2013년 4월 2일

□ 기 타: 자세한 변경 내용과 관련하여 변경 투자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